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55
----------	-----------

제출연월일	2013. 6. 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녹색건축물 확대에 필요한 사항,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군민 복리향상은 물론 에너지자립도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에너지관련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3조)
- 나.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계획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다. 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제9조)
- 다. 공공·건물·수송부문 에너지 시책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 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관하여 정함(안 제12조)
- 마. 녹색건축물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13조)
- 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하여 정함(안 제14조)
- 아. 에너지절약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제8조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제54조
-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 제25조

나. 예산조치 : 356백만원('13년도 본예산 156백만원, 추경 200백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5. 14. ~ 6. 03.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 등 에너지자립도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패시브 하우스”란 단열이 매우 잘되어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연간 난방 요구량이 매우 낮은 건축물을 말한다.
2. “액티브 하우스”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는 수동적(passive)인 패시브 하우스에 대비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여 능동적(active)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제로에너지 하우스”란 패시브 요소기술 및 액티브 요소기술을 반영하여 자급자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에너지관련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2.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3. 지속가능하고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군민의 협력 유도
6.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군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7.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4조(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계획(이하 “에너지자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10년 이상의 계획 기간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에너지 공급의 추이와 전망
2.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4.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
5. 녹색건축물의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
6.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이용 및 보급 지원
7.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8. 그 밖에 에너지자립계획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에너지자립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에너지자립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군수는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군 공보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설치) 군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3호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건축조례」에 따른 거창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계획 및 시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신재생 에너지 이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지원 및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관련 중요 사항에 관한 것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관련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에너지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 의회 의원

2. 에너지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협회 관계자

3. 군민 또는 지역주민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한 번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야별 에너지 시책)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분야별 에너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관리
2. 공공건물 및 산하기관의 고효율에너지제품, 환경표시 인증제품의 사용
3.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및 녹색건축물 확대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5.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진단

③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건축물을 신축·증축 및 개축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설비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시공 권장
2.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등에게 친환경건축물 인증 권장
3. 공사 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게 녹색건축물에 대한 교육 실시, 녹색건축물 관련 업무지침 발간·배포

④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도시 및 교통, 각종 건설 계획 등이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
2. 주차 수요관리 강화 및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 억제
3.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 체계 마련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제11조(비전선언 등) ① 군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지가 포함된 에너지자립도시 비전선언(이하 “비전선언”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군·군민·지역주민단체·사업자·에너지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실천협약(이하 “실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전선언과 실천협약에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목표, 군과 군민·지역주민단체·사업자·에너지관련기관 등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③ 각 읍·면은 주민조직 대표, 직능단체 대표, 주민, 공공시설의 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비전선언과 실천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요율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녹색건축물 보급 및 지원)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적용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으로 다음 각 호 행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등 설치(신축인 경우 포함)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증축·개축·용도변경·대수선·수선(창호·단열재·설비교체 등)
3. 전기·조명시스템 등으로 변경(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
4.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5.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
6. 냉·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보일러, 냉·난방기기 등)
7.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8.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 등에게 소요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공기업,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및 신규 주택을 녹색건축물(패시브하우스, 액티브하우스, 제로에너지 하우스, 생태건축물 단지 등)로 전환하거나 조성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군수는 제13조·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연 2회 에너지사용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에너지절약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에너지 절약문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을 위한 군민, 지역주민단체, 사업자 등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에 공적이 큰 군민, 사업자, 지역주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계획 수립
- 녹색건축물 구역 지정에 따른 일부 사업비 지원
-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나. 관련 조문

- 제9조(에너지 자립도시 계획) ③ 군수는 에너지 자립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건물부문)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 중 일부 사업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재정지원 등)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총 비용(a - b)		356	386	386	386	386	1,900
세출	도 비	52	52	52	52	52	260
	군 비	304	334	334	334	334	1,640
	소계(a)	356	386	386	386	386	1,900
세입							
	소계(b)						

3. 관련 의견

-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부분 협력과 수요증가로 추계보다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 20,000천원 정도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매년 70개소 * 4,972천원 * 15% = 156,618천원
- 녹색건축물 지원
2,120,000원/m² * 82.5m² * 8개소 * 15% = 209,880천원
(1개소당 26,235천원 정도)
- 에너지 절약 민간 홍보 및 교육 사업 : 20,000천원

작성자 : 경 제 과 양 호 일